

# 감사위원회 규정

2019. 09. 19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2019. 09. 19.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등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1. 외부감사인의 선정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4조(구성)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의로 그 순서를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1회 개최한다.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7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제9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6) 외부감사인 선정, 변경 및 해임
-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9) 감사계획 및 결과
- (10)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11)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12)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13)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4) 기타 감사위원이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위원회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

### 제11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회의 후 조속히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위원회의 역할

### 제12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 ① 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내부회계관리제도)

①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 제14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 달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감사록의 작성)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장 감사실시

### 제16조(감사부설기구)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감사업무 부서(이하 '감사부설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설기구(내부감사부서 포함)의 책임자 임면은 위원회와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정하되, 위원회의 교체요구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감사부설기구(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 제17조(감사의 실시)

- ①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와 직원(이하 '내부감사인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 인력을 내부감사인력으로 간주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할 수 있으며, 전항 단서에 의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뢰에 대하여 내부감사부서는 그 수행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 한다.

### 제18조(내부감사인력의 자격)

- ① 내부감사인력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5년 이상의 회사 근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감사관련 회사의 자격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부감사인력이 될 수 없다.

### 제19조(내부감사인력의 신분보장)

- ① 내부감사인력이 법령, 사규 등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내부감사인력의 인사평가, 승진, 이동배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 운영할 수 있다.

## 제5장 외부감사인 선정 등

### 제20조(외부감사인 선정)

- ①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이 경우 연속하는 매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외부감사인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 시간, 감사 보수, 감사 계획, 징계 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선정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 ④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단,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대신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주주

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제21조(외부감사 실시)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또는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등을 발견하여 보고받은 내역에 대하여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22조(외부감사 종료)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계약조건과 실시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평가하여 차기 연도의 감사계획 수립과 외부감사인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23조(외부감사인 변경)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외부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④ 기타 외부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24조(외부감사인 해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 이내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①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외부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③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④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외부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⑤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 훼손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전기 외부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외부감사인(이하 “전기외부감사인”이라 한다)이외 다른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제24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외부감사인 및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전기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6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12.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0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0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01.0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01.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09.19.부터 시행한다.
2. 제20조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선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외부감사인부터 적용한다.